

직 급	직 급	계 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보건 환경	보건	지방보건 이사관	지방보건 부이사관	지방보건 서기관	지방보건 사무관	지방보건 주사	지방보건 주사보	지방보건 서기	지방보건 서기보
	환경			지방환경 서기관	지방환경 사무관	지방환경 주사	지방환경 주사보	지방환경 서기	지방환경 서기보
시설	토목	지방시설 아사관	지방시설 부이사관	지방시설 서기관	지방토목 사무관	지방토목 주사	지방토목 주사보	지방토목 서기	지방토목 서기보
	수도 토목				지방수도 토목사무관	지방수도 토목주사	지방수도 토목주사보	지방수도 토목서기	지방수도 토목서기보
	건축				지방건축 사무관	지방건축 주사	지방건축 주사보	지방건축 서기	지방건축 서기보
	지적				지방지적 사무관	지방지적 주사	지방지적 주사보	지방지적 서기	지방지적 서기보

2. 大邱直轄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1. 審查過程

- 제출일자 : 1993년 2월 13일
- 제출자 : 대구직할시장
- 회부일자 : 1993년 2월 15일
- 상정 및 의결
 - 제17회 대구직할시의회(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 93. 2. 22
 -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 93. 2. 22

2. 提案說明要旨

- 심의위원수 상향조정(안 제2조)
 - 심의위원 “50인이내”를 “80인이내로”
 - 공무원위원수 “7인”을 “12인”으로
-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및 관련법령조항변경(안 제2조, 제5조, 제10조)
 - 부위원장 : “건설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 서기 : “확인평가계장”을 “투자심사계장”으로
 - 예산회계법시행령 : “제95조의 3 제3항을 “제112조 제5항”으로
- 심의대상 상향조정(안 제9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을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 허가관서장이 요청하는 총공사비：“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을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 설계변경공사금액：“5천만원이상”을 “1억원이상”으로
- 심의사항이 경미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서면심의 가능토록 신설(안 제14조)

3. 檢討報告要旨

— 黃奉九 專門委員 —

- 심의위원수를 “5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하고 심의위원중 공무원위원수를 “7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1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은 건설심의업무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심의위원 임명시 전문분야에 유능한 인사가 선정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심의대상중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비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을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 허가 관서장이 요청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비 “5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을 “10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하고
- 설계변경시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공사 규모를 현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91. 7. 18 시작제규칙 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에서 “건설주택국장”으로, 서기는 “확인평가계장”에서 “투자심사계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하고 92. 5. 11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95조의 3 제3항이 동시행령 제112조 제5항으로 조항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 위원회의 심의대상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심의업무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 질의자：楊丁壽 委員長, 崔栢永, 趙璟濟, 金元八, 徐永澤, 李張魯, 蔡鐘百 委員
- 답변자：曹昌鉉 企劃擔當官

○ 질의답변내용

질	의	답	변
○ 심의위원 수를 50인에서 80인으로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 위원 수를 62~65명정도 위촉할 예정이며 토목, 하수, 건축 등 7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음.	
○ 경미한 사항을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참석이 곤란할 때 서면심의를 하기 위해 조치가 아닌지		○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면심의는 불합리하고 부조리의 요인이 있음 이에대한 견해는		○ 단서조항으로 부득이한 경우만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 討論事項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심의를 하지 않도록 촉구
-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지향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연구검토 촉구

6. 審查結果

- 원안가결(전원찬성)

7. 參考資料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및 제39조
 -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0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시·도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시·도의 5급이상 공무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④ 제11조·제12조·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9조(설계등의 심의대상공사)

②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억원이 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

2.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이고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1억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인 공사, 이 경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개정일 : '92. 5. 11(대통령령 제13,640호)

- 개정내용

- 개정전 : 제95조의3 제3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개정후 : 제112조 제5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대구직할시 직제규칙 개정

- 개정일 : '91. 7. 18(규칙 제1,680호)

- 개정내용

- 업무분장변경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 업무가 확인평가 → 투자심사계로 업무이관

- 직위명칭변경 : 건설국장→건설주택국장